㉾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648/전송(02)797-8176
정책국 국장 이병인[6552] 정책팀장 박우민[6543] 팀원 박혜민[6648] / E-mail: wendy4866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688-07781호
시행일자 2026. 10. 8.
수 신 수신처 참조
참 조
제 목 구급차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시 환자 인계·인수 응급의료종사자의 적극 협조 요청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-925(2026. 9. 30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구급차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시 환자를 인계·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성명·면허번호 작성 및 서명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우리협회로 요청해 온바,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회 소속 산하단체 및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관련 법령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([별지 제16호서식])

나. 주요 내용 :

- 응급구조사등이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, 환자를 인계·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(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)의 종별, 면허번호, 성명,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아 기록·보관하여야 합니다.
-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환자의 상태, 이송 경과 및 처치 등을 정확히 인수·인계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정 기록지입니다.
- 이에 법령에 따른 원활한 기록지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협조 요청사항 :

- (유관 기관·단체) 소속 회원 및 회원 기관에 적극 협조 안내
- (응급의료종사자) 환자 인수 인계 시 성명, 면허번호 작성 및 서명 적극 협조

붙임 :
1) 보건복지부 공문 1부.
2)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출동 및 처치 기록지 [별지 제16호서식] 1부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 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, 대한공공의학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